

# 하 동 군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 람	기 관 의 장

제351호 2012. 11. 19 (월요일)

## 고 시

- 하동군 고시 제2012- 52 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(28차) ..... 2

## 공 고

- 하동군 공고 제2012- 972 호 군 계획시설사업 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..... 4
- 하동군 공고 제2012- 975 호 도로의 노선지정에 관한 공고 ..... 5
- 하동군 공고 제2012- 976 호 보상계획 공고 ..... 7
- 하동군 공고 제2012- 977 호 하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..... 9

회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## 하 동 군 공 보

( 2 ) 제 351 호

하동군 고시 제2012 -52호

### 도로명주소 개별고시(28차)

도로명주소법 제18조,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2. 11. 13.

### 하동군수

○ 도로명주소 :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매계리 127-4 외 14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	비고
별 지 참 조(15건)		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(☎880-2083)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([www.juso.go.kr](http://www.juso.go.kr)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1.7.29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,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.

## 하 동 군 공 보

( 3 ) 제 351 호

### 도로명주소 고시조서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 로 명 고시일	도로명부여사유	비 고
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매계리 127-4	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회남재로 30	20070618	악양면 등촌리에서 청암면 목계 리로 넘어가는 회남재라는 고개 이름에서 도로명 부여	신청
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양포리 677	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대전방길 24-4	20070618	대전방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	직권
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정서리 239-1	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정서길 18-5	20070618	염등만수 정자 숲의 서쪽 마을 에서 유래된 정서라는 자연마을 이름 반영	신청
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신성리 257-1	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상신대길 136-55	20070618	신대리 윗쪽 마을이라 하여 붙 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	신청
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관리 403	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울곡길 20	20070618	울곡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	신청
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1154-1	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화개로 1394-4	20070618	화개면을 통과하는 주요도로로 면이름에서 도로명 부여	신청
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상이리 1588-2	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금남길 462-1	20070618	칼남재, 양지땀,원골마을을 합한 행정상의 명칭을 도로명에 반영	신청
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덕은리 631-1	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상덕길 71	20070618	상덕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	신청
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신성리 883	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악양동로 346-16	20070618	도로시점이 악양중심으로 부터 동쪽에 위치하여 방향성에 따라 도로명 부여	신청
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입석리 35	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악양서로 285-17	20070618	도로시점이악양중심으로부터서쪽 에위치하는 방향성 부여	신청
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가덕리 241	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명덕윗담길 8	20080402	명덕마을고유명칭에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명덕윗담길로 명명	신청
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대치리 774	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한재길 74-35	20090302	북쪽에 있는 큰 고개라고 붙여 진 자연마을이름 반영	신청
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목계리 1610-3	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청학로 2556	20090302	횡천-청암간 도로로 주 이용도 로가 청학동으로 가는 도로	신청
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 730	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신노량길 52	20090302	신노량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 영	신청

## 하 동 군 공 보

( 4 ) 제 351 호

하동군 공고 제 2012 - 972호

### 군 계획시설사업 인가를 위한 공람공고

하동 군 계획시설사업인 광평 도시계획도로(소로2-30호선) 개설공사의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코자 다음과 같이 공람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2. 11. 12.

## 하 동 군 수

### 1. 인가신청의 요지

가. 사업시행지의 위치 : 경남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지내
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◦ 종 류 : 하동 군 계획시설사업

◦ 명 칭 : 광평 도시계획도로(소로 2- 30호선) 개설공사

다. 사업의 규모 : 연장 100m, 폭원 7.6m(소로2-29호선 일부포함)

라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◦ 성 명 : 하 동 군 수

◦ 주 소 :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번지

마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

◦ 착 수 :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

◦ 준 공 : 착수일로부터 12개월

### 2. 열람의 일시 및 장소

가. 공고방법 : 경상남도 공보 또는 일간신문

나. 공람장소 : 하동군청 도시건축과(☎880-2239)

다. 공고기간 : 공고일로부터 20일간

공고 제2012-975호

## 도로의 노선지정에 관한 공고

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의 노선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12년 11월 12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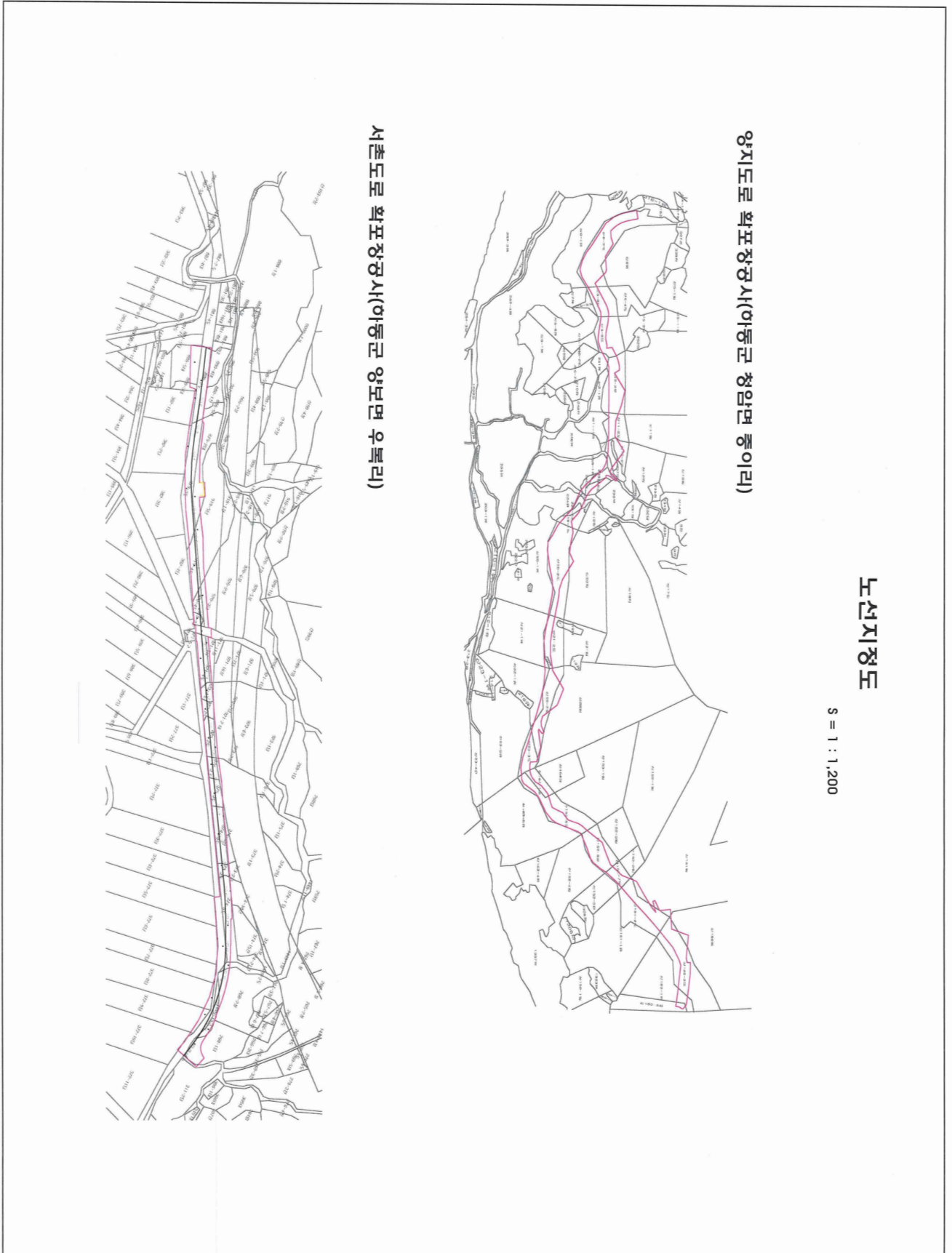
### 하 동 군 수

읍면	도로의 종류	노선명	노선 번호	도로구간		총연장 (km)	주요 경과지	개발계획		지정사유
				기점	종점			도로 너비 (m)	포장 너비 (m)	
청암면	리도	양지선 (난천~시목)	203	중이리 산6-2	평촌리 산152-4	0.78	하동호	7	7	양지도로 확·포장 공사
양보면	농도	섬백선 (섬백~백선)	307	우복리 880-5	우복리 372-10	0.53	서촌 마을	8	8	서촌도로 확·포장 공사

- 주 : 1. 도로의 종류란에는 면도, 리도, 농도를 기입  
 2. 기점·종점란에는 당해 지번을 기입  
 3. 노선지정도는 축적 1/500 내지 1/1,200의 지형이 포함된 지적도에 작성

# 하 동 군 공 보

( 6 ) 제 351 호



하동군 공고 제 2012- 976호

## 보 상 계 획 공 고

진교 상평 도시계획도로(중로3-4호, 소로3-9호)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 15조(보상 계획의 열람 등)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기간 내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2012년 11월 14 일

## 하 동 군 수

### 1. 사업개요

- 가. 사 업 명 : 진교 상평 도시계획도로(중로3-4호, 소로3-9호) 개설공사
- 나. 위 치 :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지내
- 다. 사 업 량 : 도로개설 1공구(중로3-4호) L=252m, B=12m  
2공구(소로3-9호) L=65m, B=6m
- 라. 사업 시행자 : 하동군수

### 2. 보상계획

- 가. 보상대상 물건 : 붙임 토지 및 물건조서 참조
- 나. 보상시기 : 추후 개별통보
- 다. 보상금 집행 및 지급장소 : 하동군 도시건축과 도시개발담당
- 라. 보상방법 :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 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 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산정하여 지급
- 마. 보상절차 : 보상계획통지 및 보상물건조서 열람 → 측량 및 감정평가 실시 → 손실보상금 산정 및 통보 → 손실보상협의

### 3. 보상계획 열람

- 가. 열람기간 : 2012. 11. 14 ~ 2012. 11. 29(15일간)
- 나. 열람장소 : 하동군 도시건축과 도시개발담당(055-880-2239)

### 4. 기타사항 : 편입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는 공고기간 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,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하동군 도시건축과 도시개발담당 (055-880-2239)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하 동 군 공 보

( 8 ) 제 351 호

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조서											
일련번호	공사명	토지소재지			지목	지적	편입면적 ( m <sup>2</sup> )	지장물	소유자		비고
		지번							주소	성명	
1	진교 상평 도시계획도로 (중로3-4호, 소로3-9호) 개설공사	진교	진교	산 17-1	임야	12,593	457		고성군 거류면 당동리 174 새평지@103동703호	김석돈, 김량경	
2		진교	진교	산 21-1	임야	5,491	361		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191	경상남도 교육감	
3		진교	진교	649-3	대	206	75		”	경상남도 교육감	
4		진교	진교	466	학교용지	22,314	241		”	경상남도 교육감	
5		진교	진교	639	전	116	116			재정경제부	
6		진교	진교	산 22	임야	2,777	553		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375	진조사	
7		진교	진교	631-2	전	420	24		양보면 통정리 224	이희원	



하동군 공고 제2012- 977호

**하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**

하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처리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2 년 11월 15일

하 동 군 수

1. 자치 법규명 : 하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조례
2. 제안 이유 :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의 개정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인원이 증가하였으며 읍면 지역의 위기가정 상시 발굴 및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민·관 연계 복지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.
3. 주요 골자 : 기금의 일몰제 적용 변경(안 부칙제2조)
  - 가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근거 마련(안 제2조제1항제6호 신설)
  - 나.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1조의4 및 제1조의5 개정으로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 조정(안 제3조)
  - 다. 복지대상자의 발굴, 자원봉사, 민·관 연계 등을 위한 읍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근거 마련(안 제3조의2 신설)
  - 라.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개정으로 복지위원의 정수 조정(안 제17조)
  - 마. 법제처의 “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”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군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
4. 의견 제출 :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12월 5일까지 하동군(참조 : 주민복지실, 전화880-2343, FAX 880-2349, e-mail birani@korea.kr)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- 가.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사유)
  - 나. 성 명(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

## 하 동 군 공 보

( 10 ) 제 351 호

### 하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부터 제1조의5까지에 따라 하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과 같은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복지위원의 직무 및 위촉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중 “각호의”를 “각 호의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.

6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」 제29조제2항에 따라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

제3조제1항 중 “10인 이상 20인 이하”를 “10명 이상 30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”를 “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1인”을 “1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10인 이상 20인 이하”를 “10명 이상 30명 이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”를 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8항 중 “5인”을 “5명”으로 한다.

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.

제3조의2(읍·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) ① 지역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발굴과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각 읍·면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(이하 “읍·면 협의체”라 한다)를 둔다.

## 하 동 군 공 보

( 11 ) 제 351 호

② 군수는 읍·면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.

제4조 중 “제4항에 의한”을 “제4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6조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하고, “전임위원의 잔여기간”을 “전임위원의 남은기간”으로 한다.

제7조 중 “기타의”를 “그 밖의”로 하고,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1인”을 “1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조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9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제5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규정에 의한”을 “규정에 따른”으로 하며,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12조 중 “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”를 “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”으로 하고, 같은 조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14조 중 “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기타”를 “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의”로 한다.

## 하 동 군 공 보

( 12 ) 제 351 호

제15조 조명을 “협업체 운영지원”에서 “운영지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“지역사회복지협업체”를 “각 협업체”로 한다.

제16조제1항 중 “저소득주민·아동·노인·장애인·모자가정·요보호자”를 “저소득주민·아동·노인·장애인·모자가족·부자가족·요보호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7조 복지위원의 정수는 읍·면별로 각 2명 이상으로 한다.

제18조 중 “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”를 “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”로 한다.

제19조 중 “전임위원의 잔여기간”을 “전임위원의 남은기간”으로 한다.

제23조 중 “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기타”를 “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의”로 한다.

제24조 중 “협업체”를 “각 협업체 및 읍·면 협업체”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<u>이 조례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 7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3 내지 제 1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하동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과 동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위원의 직무 및 위촉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 <p>제2조(기능) ① 지역사회 복지협의체(이하“대표협의체”라 한다)는 다음 <u>각호의</u> 사항을 심 의.건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.</p> <p>제2조제1항제1호~5호(생 략)</p> <p>&lt; 신 설 &gt;</p> <p>제3조(구성)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 원장을 포함하여 <u>10인 이상 20인</u> 이하의 위 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의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7조의2 제2항 <u>각 호의 1에</u> 해당하는 자중 에서 ~ (중 략)</p> <p>③ 대표협의체 또는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,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<u>1인</u>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 다.</p> <p>④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</p>	<p>제1조(목적) <u>이 조례는 「사회복지사업법 」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조의4부터 제1조의5까지에 따라 하 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과 같은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복지위 원의 직무 및 위촉등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 <p>제2조(기능) ① ----- ----- <u>각 호의</u> ----- -----.</p> <p>제2조제1항제1호~5(현행과 같음)</p> <p>6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」 제29조제2 항에 따라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할 사 항</p> <p>제3조(구성) ① ----- ----- <u>10명 이상 30명</u>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 <u>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</u> ~ (중 략)</p> <p>③ ----- ----- <u>1명</u>을 ----- -----.</p> <p>④ -----</p>

## 하 동 군 공 보

( 14 ) 제 351 호

현 행	개 정 안
<p>원장을 포함하여 <u>10인 이상 20인 이하</u>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1조의4제2항 <u>각 호의 1에 해당하는</u> 자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, 복지기획업무담당주사, 보건의료 업무담당주사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.</p> <p>⑥~⑦ (생략)</p> <p>⑧ 긴급지원심의소위원회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위원중에서 <u>5인</u>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⑨ (생략)</p> <p>&lt; 신 설 &gt;</p> <p>제4조(위원명단 공개)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 제2항 내지 제3조의 <u>제4항에</u> 의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은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</p> <p>제5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(이하 “각 협의체”라 한다)의 위원장은 <u>당해</u> 협의체를 대표하고 <u>당해</u></p>	<p>----- <u>10명 이상 30명 이하</u> -----.</p> <p>⑤ ----- ----- <u>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</u> -----</p> <p>-----.</p> <p>⑥~⑦ (현행과 같음)</p> <p>⑧ ----- ----- <u>5명</u> -----</p> <p>-----.</p> <p>⑨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3조의2(읍·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) ① 지역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발굴과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각 읍·면에 읍·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(이하 “읍·면 협의체”라 한다)를 둔다.</u></p> <p><u>② 군수는 읍·면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4조(위원명단 공개) ----- ----- <u>제4항에 따른</u> -----</p> <p>제5조(위원장 등의 직무) ----- ----- <u>해당</u> ----- <u>해당</u></p>

하 동 군 공 보

( 15 ) 제 351 호

현 행	개 정 안
<p>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.</p> <p>제6조(위원의 임기) 각 협의체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<u>당해</u>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,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<u>전임위원의 잔여기간</u>으로 한다.</p> <p>제7조(위원의 해촉)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, 질병, 품위손상, <u>기타의</u>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<u>당해</u>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</p> <p>제8조(간사 및 직원)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<u>1인</u>의 간사를 둔다. 이 경우 하동군 소속 공무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각 협의체는 <u>당해</u>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.</p> <p>제9조(회의 등)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<u>당해</u>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, 군수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</p> <p>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<u>당해</u>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.</p>	<p>-----.</p> <p>제6조(위원의 임기) ----- ----- ----- <u>해당</u> ----- ----- <u>전임위원의 남은기간</u> -----.</p> <p>제7조(위원의 해촉) ----- ----- <u>그 밖의</u> ----- ----- <u>해당</u> ----- -----.</p> <p>제8조(간사 및 직원) ① ----- ----- <u>1명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<u>해당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9조(회의 등) ----- <u>해당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<u>해당</u> ----- -----.</p>

## 하 동 군 공 보

### ( 16 ) 제 351 호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(회의록)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여야 한다.</p> <p>1.~4.(생 략)</p> <p>5. <u>기타</u> 위원장(실무위원장 포함)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</p> <p>② 제1항의 <u>규정에 의한</u>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<u>당해</u>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.</p>	<p>제10조(회의록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1.~4.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그 밖의</u> ----- -----</p> <p>② ----- <u>규정에 따른</u> ----- ----- <u>해당</u> ----- -----.</p>
<p>제12조(의견의 청취) 각 협의체 <u>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</u> 전문가 또는 관계인(이하“관계인 등”이라 한다)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, 자료의 제출 및 <u>기타</u>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</p>	<p>제12조(의견의 청취) ----- <u>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</u> ----- ----- ----- ----- <u>그 밖의</u> ----- -----.</p>
<p>제14조(회의 수당) 각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, 관계인 등에게는 「하동군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<u>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기타</u>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(중 략)</p>	<p>제14조(회의 수당) ----- ----- ----- <u>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의</u> ----- ----- . (중 략)</p>
<p>제15조(<u>협의체 운영지원</u>) 군수는 <u>지역사회복지협의체</u>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,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</p>	<p>제15조(<u>운영지원</u>) ----- <u>각 협의체</u>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16조(직무) 복지위원은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</p>	<p>제16조(직무) (현행과 같음)</p>



하 동 군 공 보

( 17 ) 제 351 호

현 행	개 정 안
<p>① 관할 지역안의 <u>저소득 주민·아동·노인·장애인·모자가정·요보호자</u> 등 법 제2조제1항의 사회복지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(이하“사회복지대상자”라 한다)에 대한 상담 및 선도</p> <p>②(생략)</p> <p>③ 사회복지관계 행정기관, 사회복지시설, <u>기타</u> 사회복지관계 단체와의 협력</p> <p>④ <u>기타</u> 관할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처리</p> <p>제17조(정수) ① 복지위원의 정수는 읍·면별 2인으로 하되 인구 5,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인으로 한다.</p> <p>② 읍·면의 인구가 증가하여 복지위원의 정수가 늘어났을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위촉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읍·면의 인구가 감소하여 복지위원의 정수가 줄어들었을 경우에는 기 위촉한 복지위원의 임기만료 시까지는 해촉하지 아니한다.</p> <p>제18조(위촉절차) 복지위원은 <u>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</u> 읍·면장의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한다.</p> <p>제19조(임기) 복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된 위원에 임기는 <u>전임위원의 잔여기간</u>으로 한다.</p>	<p>① ----- <u>저소득주민·아동·노인·장애인·모자가족·부자가족·요보호자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②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</p> <p>, <u>그 밖의</u> -----</p> <p>④ <u>그 밖의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<u>제17조(정수) 복지위원의 정수는 읍·면별로 각 2명 이상으로 한다.</u></p> <p>② ( 삭 제 )</p> <p>③ ( 삭 제 )</p> <p>제18조(위촉절차) ----- <u>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</u>-----</p> <p>-----.</p> <p>제19조(임기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전임위원의 남은기간</u> -----.</p>

## 하 동 군 공 보

( 18 ) 제 351 호

현 행	개 정 안
<p>제23조(수당 등) 복지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교육에 참석할 경우에는 『하동군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』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<u>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등 기타</u>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제24조(운영규칙)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<u>협의체</u> 등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23조(수당 등) ----- ----- ----- - <u>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의</u> ----- -----.</p> <p>제24조(운영규칙) ----- - <u>각 협의체 및 읍·면 협의체</u> ----- -----.</p>